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동고동락국장
제출연월일	2021. 1. 21.

참여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징수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향유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명 변경

나.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논산아트센터”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안 제1조~제2조)

다. 대전시설 용도변경으로 “대전시설, 소전시설” 용어를 “전시실”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안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라.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조정, 불필요한 기타 사용료 삭제 및 무료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18.(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041-635-3820)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문화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논산시 문화예술회관”을 “논산아트센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논산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호, 제4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6항, 제7조제7항, 제8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호,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중 “회관”을 각각 “센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 “회관”이란” 을 각각 “ “센터”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6조 중 “대전시설, 소전시설”을 각각 “전시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관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을 각각 “센터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시설 및 소전시설”을 “전시실”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센터”로 한다.

제16조제3항단서 중 “회관이”를 “센터가”로 한다.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및 별지 제 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논산아트센터”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문 화 예 술 과 장	유 정 태
	공 연 축 제 팀 장	노 원 중
	담 당 자	최 필 성 (041-746-5664)

[별표]

논산아트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09:00 ~ 12:00)	80,000	10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 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 하는 경우는 사용 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후(13:00 ~ 17:00)	100,000	120,000	
		야간(18:00 ~ 22:00)	120,000	140,000	
	소공연장	오전(09:00 ~ 12:00)	40,000	50,000	
		오후(13:00 ~ 17:00)	50,000	60,000	
		야간(18:00 ~ 22:00)	60,000	70,000	
전시실		1일(09:00 ~ 18:00)	40,000	5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20,000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1대/1회	10,000	
피아노	대형	1회	60,000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중형	1회	30,000	
음 향	음향사용료 유선마이크 기본2개	1회	대공연장 : 30,000 소공연장 : 20,000	무선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추가1개당	3,000	
	무선마이크	1회*1개	5,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운영인력 별도
합창단(라이저)		1회	10,000	운영인력 별도
포그머신		1회	20,000	운영인력 별도, 재료비 별도
무빙라이트		1대/1회	20,000	운영인력 별도
PAR64		1대/1회	2,000	운영인력 별도
PERFILE		1대/1회	3,000	운영인력 별도
무빙콘솔		1대/1회	100,000	운영인력 별도
덧마루		1회*10개	30,000	운영인력 별도
접 견 실		1회	2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냉방	난방	
대공연장	1시간	30,000원	40,000원	예열시간 포함
소공연장	1시간	20,000원	25,000원	
전시실	1일	40,000원		
접견실	1회	20,000원		

4. 기타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이동용 앰프	1회	10,000	
보면대	1개×1회	500	

※주: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1시간 초과 사용 시 1회사용료를 가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논산아트센터(사용·변경)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단체명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내용 :

4. 사용허가기간 :

시 간 :

사용허가횟수 :

5. 사용료 : 금

원

부대시설명	사용량	부대시설명	사용량	부대시설명	사용량	부대시설명	사용량
무대조명(대)		무대조명(소)		핀라이트		무빙라이트	
무빙콘솔		PAR64		PROFILE		포그머신	
음향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피아노		이동용앰프		접견실			

6. 허가조건 : 「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논 산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1. 아래의 경우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나.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
 -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라. 공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바.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나 집회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
 - 사.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로 예술성이 배제된 경우
 - 아.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행사 등
 - 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차.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센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영화, 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센터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입장료, 제세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전시회의 경우 전시기간동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작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 태만으로 전시작품이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센터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이 허가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논산아트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담당자		E-mail	

감면 내용	행사명		허가일자	
	행사내용			
	사용일시			
	사용시설			
	감면신청사유			
	증빙서류부			
	기타			

『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_____ (인)

논산시장 귀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u></p>	<p><u>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u>논산시 문화예술회관</u>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논산아트센터</u>----- ----- -----.</p>
<p>제2조(명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u>논산시 문화예술회관</u>(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명칭은 <u>논산아트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p>
<p>제3조(위치) <u>회관</u>의 위치는 논산시 시민로 270(내동)에 둔다.</p>	<p>제3조(위치) <u>센터</u>----- -----.</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회관</u>”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u>대전시설</u>, <u>소전시실</u>), 부대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p> <p>2. “<u>회관의 사용</u>”이란 제1호의</p>	<p>제4조(정의) ----- ----- -----</p> <p>1. “<u>센터</u>”란 ----- ----- <u>전시실</u>----- ----- -----.</p> <p>2. <u>센터</u>-----</p>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생략)

4.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전시·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회관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 8. (생략)

제5조(업무) 회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개정 2014.9.22.)

1. 회관 근무자 중에서 상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관리책임자에게는 관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 5. (생략)

제6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 시설, 소전시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논산시

-----.

3. (현행과 같음)

4. -----

----- 센터 -----

-----.

5. ~ 8. (현행과 같음)

제5조(업무) 센터-----

1. 센터-----

----- 센터장 -----
-----.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범위) 센터-----
----- 전
시설-----
-----.

제7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전에 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생략)

③ ~ ⑤ (생략)

⑥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⑦ 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

-----.

② -----

센터 -----

1.~3.(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센터-----

-----.

⑦ 센터-----
--- 센터-----

거나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 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 6. (생략)
- 7. 그 밖의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4. 생략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6. 생략
- ②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

-----.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

- 1. ~ 6. (현행과 같음)

7. ----- 센터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센터 -----
--

- 4. (현행과 같음)

5. -----
-- 센터 -----

- 6. (현행과 같음)

② -----

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③ (생략)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에서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특례) ① (생략)

② 대전시설 및 소전시설의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2시간미만 사용시에는 당해사용료의 50퍼센트를, 2시간이상 사용시에는 1일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3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③ (생략)

④ 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사용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센터 -----

제11조(사용료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시실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센터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작 이전에 문
화예술회관사용결의부로 통보하
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략)

1. (생략)
2. 회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
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 6. (생략)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생
략)

- 1.~2. (생략)
3. 회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
비나 부착을 하는 경우
- ② ~ ⑤ (생략)

제16조(관람료) ① (생략)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
(이하“입장권”이라 한다)을 회
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
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발매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
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

----- 센
터 -----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
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센터-----

3.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현
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3. 센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센
터-----

-----.

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회수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17조(기획공연) ① 시장은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회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9조(관람료의 경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80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중

-----.

③ -----

----- 센터 -----
-----.

----- 센터 -----
터가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센터 -----

-----.

제17조(기획공연) -----
----- 센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관람료의 경감)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소지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5·6. (현행과 같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자

출신 포로가족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생략)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입장의 제한) (생략)

- 1. 회관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
- 2. ~ 4. (생략)

제23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자원 봉사자 및 공연 도우미)

-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자 및

제2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센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센터-----

-----.

제22조(입장의 제한) (현행과 같음)

- 1. 센터-----

-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회원제 운영) ----- 센터-----

-----.

제24조(자원 봉사자 및 공연 도우미) -----

- ① --- 센터를 -----

공연 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무는 각 호와 같
다.

② ~ ③ (생략)

제25조(안전진단의 날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무대 시설 등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
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안전진단의 날에는 회관의 대
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안전진단의 날 운영)

① -----센터-----

-----.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
-----.

현 행

[별표]

문화예술회관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 휴일		
공 연 장	대공 연장	오전(09:00~12:00)	80,000	10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후(13:00~17:00)	100,000	120,000	
		야간(18:00~22:00)	120,000	140,000	
	소공 연장	오전(09:00~12:00)	40,000	50,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60,000	70,000	
전 시 실	대전 시설	1일(09:00~18:00)	30,000	40,000	
	소전 시설	1일(09:00~18:00)	40,000	50,000	

개 정 안

[별표]

논산아트센터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 휴일		
공 연 장	대공 연장	오전(09:00~12:00)	80,000	10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후(13:00~17:00)	100,000	120,000	
		야간(18:00~22:00)	120,000	140,000	
	소공 연장	오전(09:00~12:00)	40,000	50,000	
		오후(13:00~17: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60,000	70,000	
전 시 실	1일(09:00~18:00)	30,000	40,000		
		30,000	4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	40,000
	소공연장	1회	20,000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2kw/1회	10,000
피아노	대형	1회	60,000
	중형	1회	30,000
	업라이트	1회	20,000
음향	음향사용료	1회	10,000
	유선마이크 기본2개	추가1개 당	3,000
	무선마이크	1회*1개	5,000
	집음마이크	1회*1개	7,000
	음향재생기	1회	5,000
	녹음료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노트북	1회	1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합창단	1회	1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포그머신	1회	10,000	재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장치결이봉(BATTERY)	1개*1회	5,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접견실	1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냉방	난방	
대공연장	1시간	30,000원	40,000원	예열시간도 포함 됨
소공연장	1시간	20,000원	25,000원	
전시실	1일	40,000원		
접견실	1회	2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20,000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1대/1회	10,000
피아노	대형	1회	60,000
	중형	1회	30,000
음향	음향사용료	1회	대공연장 : 30,000 소공연장 : 20,000
	유선마이크 기본2개	추가1개 당	3,000
	무선마이크	1회*1개	5,000
	무선마이크	1회*1개	5,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운영인력 별도
합창단(라이저)	1회	10,000	운영인력 별도
포그머신	1회	20,000	운영인력 별도, 재료비 별도
무빙라이트	1대/1회	20,000	운영인력 별도
PAR64	1대/1회	2,000	운영인력 별도
PROFILE	1대/1회	3,000	운영인력 별도
무빙콘솔	1대/1회	100,000	운영인력 별도
덧마루	1회*10개	30,000	운영인력 별도
접견실	1회	2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냉방	난방	
대공연장	1시간	30,000원	40,000원	예열시간 포함
소공연장	1시간	20,000원	25,000원	
전시실	1일	40,000원		
접견실	1회	20,000원		

4. 기타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영화촬영	1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T.V녹화료	1회	1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T.V중계료	1회	1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아치설치료	1회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에어바우스설치료	1회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DVD녹화료	1회	20,000	DVD, CD는 사용자 부담임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이동용 앰프	1회	10,000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전시회 등 사용)
현판 및 현수막설치료	1회	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장탁자	1개×1회	2,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팔걸이의자	1개×1회	1,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접의자	1개×1회	5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보면대	1개×1회	5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함

4. 기타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이동용 앰프	1회	10,000	
보면대	1개×1회	500	

※주: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1시간 초과 사용 시 1회사용료를 가산한다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회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영화, 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입장료, 제세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전시회의 경우 전시기간동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작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 태만으로 전시작품이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이 허가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센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영화, 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센터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입장료, 제세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관리의무 태만으로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전시회의 경우 전시기간동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작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 태만으로 전시작품이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센터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이 허가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담당자		E-mail	
행사명			허가일자	
행사내용				
사용일시				
사용시설				
감면신청사유				
증빙서류첨부				
기타				
<p>『<u>논산시 문화예술회관</u>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성명 : (인)</p>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논산아트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담당자		E-mail	
행사명			허가일자	
행사내용				
사용일시				
사용시설				
감면신청사유				
증빙서류첨부				
기타				
<p>『<u>논산아트센터</u>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성명 : (인)</p>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담당자		E-mail	
취소내용	허가번호		허가일자	
	허가내용			
	취소사유			
	사용료			
반환내용	반환신청사유			
	반환금액			
	증빙서류부			
	기타			
<p>『<u>논산시 문화예술회관</u>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 취소 및 반환금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성명 : (인)</p> <p>논산시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논산아트센터 사용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담당자		E-mail	
취소내용	허가번호		허가일자	
	허가내용			
	취소사유			
	사용료			
반환내용	반환신청사유			
	반환금액			
	증빙서류부			
	기타			
<p>『<u>논산아트센터</u>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사용 취소 및 반환금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성명 : (인)</p> <p>논산시장 귀하</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유 정 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

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